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촉진〉

■ 김우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96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법의 목적에 포함(안 제1조)	3
2.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책 등(안 제3조 등)	5
3.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대한 업무의 위탁(안 제38조 제2항 등) ·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우영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9. 3.

다. 회 부 일 : 2024.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35조, 제38조 및 제38조의2).

Ⅲ. 검토의견

1.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법의 목적에 포함(안 제1조)

가. 개정안 요지

- 법의 목적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촉진’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u>이바지</u>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u>이바지</u> <u>하고,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u> <u>촉진함</u> -----.

다. 검토사항

-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사람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¹⁾,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정보
자원이자 이용자에게 편리한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s)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측위 및 위치정보의 활용, 융·복합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따라
우리나라의 LBS 시장 매출액 규모는 2019년 1조 5,918억원에서
2021년 2조 6,279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²⁾.

○ 그런데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은 법의 목적에 포함
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정보통신기술 및 LBS 시장의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정보
산업 진흥을 법의 목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에 대해 정의하고 있을 뿐 ‘위치정보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치정보산업의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치정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22.6.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용
입장임.

2.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책 등(안 제3조 등)

가. 개정안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하는 위치정보 관련 시책의 내용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포함함(안 제3조).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치정보의 <u>보호 및 이용</u>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u>이용</u>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위치정보의 <u>보호·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u>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 ----- ----- ----- <u>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u> ----- ----- -----.
1. 위치정보의 <u>보호 및 이용</u>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1. ----- <u>보호·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4. ~ 6. (생략)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u>보호 및 이용</u>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u>조성</u> 등 제35조(위치정보의 <u>이용촉진</u>)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u>보호 및 이용</u>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u>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u> 실시할 수 있다. <u><신 설></u>	<u>3의2.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u> 4. ~ 6. (현행과 같음) 7. -----<u>보호 ·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u>-----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u>조성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u> 등 제35조(위치정보의 <u>이용촉진</u> 등에 관한 사업) ① -----<u>보호 ·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u>----- -----<u>다음 각 호의 사업을</u>----- ----- 1. <u>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 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u>

현행	개정안
<u><신설></u>	2. <u>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u> 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u><신설></u>	3. <u>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u>
<u><신설></u>	4. <u>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u>
<u><신설></u>	5. <u>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u>
<u><신설></u>	6. <u>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u>
<u><신설></u>	7. <u>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u>
<u><신설></u>	8. <u>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 및 LBS 시장의 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안 제35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은 현행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3조³⁾ 각 호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산업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24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차세대 위치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위치정보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19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3)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2.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3.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4.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
6. 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7.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22~2024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 관련 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수행 방식 (수행기관)	예산액(백만원)		
			2022	2023	2024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 위치정보 법체계 개선 및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교육	출연 (KISA)	86	86	86
	-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지원) 위치정보 법제도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위치정보지원센터 운영	보조 (KCUP4))	143	143	129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안정적 운영) 정확하고 끊임없는 Wi-Fi AP 기반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보안관제 등 플랫폼 안정적 운영	보조 (KTOA5))	220	198	220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 긴급구조 플랫폼 취약점 점검 등 시스템 유지·보수 -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제고) 긴급전화에 대한 정밀측위 시험을 통해 위치정보 전달성공률을 높이는 등 위치정보의 품질제고	출연 (KISA)	961	961	1,180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위치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특허출원,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사업화 지원 - (위치정보 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소·영세 위치정보 사업자가 겪는 법·제도, 기술, 경영 분야별 애로사항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 컨설팅 지원	출연 (KISA)	1,170	1,170	1,970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 점검) 위치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자 법규준수 실태점검 및 위치정보 활용서비스 모니터링	출연 (KISA)	850	850	850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은 현행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3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반면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치정보의 활용도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4)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5)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3.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대한 업무의 위탁(안 제38조 제2항 등)

가. 개정안 요지

-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하고, 위탁 대상 업무의 범위에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안 제38조 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⁶⁾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38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u>한국인터넷진흥원</u>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	② ----- ----- ----- ----- ----- <u>한국인터넷진흥원</u> (이하 “ <u>한국인터넷진흥원</u> ”이라 한다), 「방송통신발

6) 수뢰·사전수뢰(제129조), 제삼자뇌물제공(제130조),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제131조), 알선수뢰(제132조)

현행	개정안
<u>국정보통신기술협회</u>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u><신설></u>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u>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u>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u><신설></u>	<u>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 한다)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u>-----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업무</u> 4. (현행과 같음) <u>5.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u>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은----- ----- -----. <u>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u>

현행	개정안
<신설>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신설>	3.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임직원

다. 검토사항

- 위치정보법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임⁷⁾.
 -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2023년 말 기준 자산규모 약 198백만원, 조직 구성인원 7명으로⁸⁾, 회원사 유치확대 및 워크숍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 개정안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안 제35조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7) 제35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①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회장 1명, 부회장 2명, 상근부회장 1명, 이사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현행 법령을 살펴보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무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⁹⁾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¹⁰⁾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의 사무로 민간위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에 현행 위치정보법 제38조 제2항¹¹⁾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동법에 따른 점검·검사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업무, 실태점검 업무, 표준화 업무로 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 업무위탁의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안 제35조 제1항의 사업은 관련 연구개발사업, 선도·응용기술사업, 시범사업 등을

9)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0)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11)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파기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3.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
4.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위치정보 관련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이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연구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함¹³⁾.
- 따라서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

12) 위치정보법

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13)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특별히 위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사, 검사 등 업무가 있다면 현행 제38조 제2항에 민간위탁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가능 업무가 매우 광범위하여, 위탁 가능 업무가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반면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치정보의 활용도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종합해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와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탁 가능 업무가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안별 신중검토 필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230